

창원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0가단1001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윤

담당변호사 박세영

변 론 종 결 2022. 7. 12.

판 결 선 고 2022. 8. 9.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8. 체결된 증여계약은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은 2003. 3. 2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와 G은 F의 위 대여금채무를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2) E은행은 2004. 3. 31. 이 사건 채권을 H 유한회사에, H 유한회사는 2005. 5. 30.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각 양도하였다.

3) I은 F, D,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합125597호)에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0. 4. 27. ① F, G은 연대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D은 F, G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F에 대하여 2010. 6. 9., D에 대하여 2010. 5. 18., G에 대하여 2010. 5. 13. 각 확정되었다.

4) I은 2010. 10. 20. 이 사건 채권을 J 주식회사에, J 주식회사는 2012. 10. 17. K 주식회사에, K 주식회사는 2016. 5. 19. L 주식회사에, L 주식회사는 2016. 7. 13.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다.

5) 원고는 2017. 3. 23. F에게 위와 같은 채권의 순차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D에게 위와 같은 채권의 순차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D의 배우자인 피고가 2017. 3. 27. 이를 수령하였다.

6) 원고는 F, D, G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0728호)에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 12. '원고에게, ① F, G은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D은 F, G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F에 대하여 2021. 1. 28., D에 대하여 2022. 5. 12., G에 대하여 2021. 1. 28. 각 확정되었다.

나. D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D은 2018. 10. 8. 배우자인 피고와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0. 12.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70381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D의 무자력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유일한 재산이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29, 3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은 이로 인해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빚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이자율이 높아서 신용도가 좋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 10. 12. M조합으로부터 100,000,000원의 추가 대출을 받아 빚을 갚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참조).

또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2013. 5. 14. 채권최고액 132,000,000원, 근저당권자 N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8. 10. 1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근저당권자 M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원고의 채권액 50,00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아

별지